

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
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

제 안 설 명

-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장님!
그리고 서울시의회 선배·동료 위원님 여러분!
국민의힘 강동구 제1선거구 김혜지의원입니다.
-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- 먼저, 대안교육지원센터 운영 근거인 제6조를 삭제하고자 합니다. 이미 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대안교육지원을 위한 기관지원기관이 있고, 다양한 민간지원시설 또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시민의 혈세낭비를 막고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막고자 합니다.
- 또, 대안교육기관의 지원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경우 자칫 교육청의 무분별한 지원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. 이에 제 8조를 삭제하여 문제를 없애고자 했습니다.
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 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바탕으로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
-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